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04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김동아

허성무 · 조인철 · 이병진

이재강 · 최민희 · 백승아

이수진 · 김윤 · 박용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원인 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보고서로 작성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 서를 참고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함.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동종·유사 사업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 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유사 재해의 재 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 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대책,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6조의2(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
	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
	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재
	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대
	책, 공개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